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점

김규동 연구위원, 김윤진 연구원

2015년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판매된 이후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과거 북미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지율 적용의 중요성이 경고되었으며, 해지율 관리 실패로 인해 보험회사가 파산한 사례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을 제한하고 해지율 산출기준을 제시하는 제도 개정을 발표함. 제도 변경이 시장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해지율 관리 실패로 인한 보험회사 파산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 및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도 변경을 예고하였음¹⁾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보험상품임²⁾
 -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3이원 방식과 달리,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율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음³⁾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시장이 과열되면서 몇 가지 부작용이 지적되었으며, 금융당국의 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일부 보험회사들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과 연금의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을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시장 과열은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였음

-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7. 2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 2011년과 2015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상품 개발 시 최적해지율을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현재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 개발되었으며, 2015년 7월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이 국내 최초의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판매하였음
- 3) 표준형 보험상품은 3이원 방식으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한 보험상품을 의미함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⁴⁾ 판매단계에서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오인하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함⁵⁾
 - 보험설계사들은 저금리로 인해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내용을 오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실제 해지율이 상품개발에 적용된 최적해지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율차손이 발생하게 되고,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⁶⁾
 - 해외 사례로 캐나다 계리사회(CIA: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는 1980년대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부적절한 해지율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 과소산출 및 준비금 과소적립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해지율 가정 및 준비금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가 있음⁷⁾
 -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무해지 환급형으로 판매하였던 미국 Penn Treaty는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2017년 최종 파산 결정되었는데,⁸⁾ 이는 해지율 리스크로 인해 파산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음⁹⁾

■ 이에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상품 구조와 해지율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상품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였음¹⁰⁾
 - 이는 소비자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경험통계 기반의 최적해지율 산출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였음
 - 최적해지율을 경험통계에 근거하여 산출하게 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과도하게 높은 해지율 적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보험회사의 해지율차손 가능성을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제도변경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해 가능함
 - 각각 7월과 9월에 입법예고 및 사전예고를 통해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으며, 11월 중에 시행 예정임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5. 8),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6. 20),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0. 25),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주의하세요!’-소비자경보(주의) 발령”

6) 김규동(2019. 12),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CEO Report』, 보험연구원

7) SOA(1989), “Term to 100 Products - Canadian Perspective”, *Record of Society of Actuaries*, Vol.15, No.3B, p.1686

8) <https://www.nolhga.com/companies/public/main.cfm/NAICCode/63282>

9)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2018), “The Risks of Pricing New Insurance Products: The Case of Long-Term Care”, Chicago Fed Letter

10) 다만,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상품의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가능함

〈표 1〉 표준형 상품 및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급률 비교(종신보험, 20년납)

구분			표준형보험		무해지환급금 보험			
					개정 전		개정 후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23,300		16,900		14,500	
경과 기간	납입 중	1	-	0.0%	-	0.0%	-	0.0%
		5	1,049,900	75.1%	-	0.0%	-	0.0%
		10	2,418,500	86.5%	-	0.0%	-	0.0%
	납입 후	20	5,438,900	97.3%	5,438,900	134.1%	3,384,723	97.3%
		30	6,657,500	119.1%	6,657,500	164.1%	4,143,079	119.1%
		50	8,868,700	158.6%	8,868,700	218.7%	5,519,148	158.6%
		70	9,877,300	176.6%	9,877,300	243.5%	6,146,818	176.6%

주: 납자 40세, 가입금액 1천만 원, 예정이율 2.5%, 최적해지율 3.5%(납입기간 중)임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0. 7. 28)

■ 그러나 제도변경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불완전판매는 판매단계에서 감독해야 할 문제이며, 높은 환급률을 목적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므로, 사전적으로 상품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임
- 경험통계를 기초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해지의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아, 적절한 최적해지율 산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표준형 보험상품에서 해지환급금은 4~5년 경과 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최초 판매 후 5년밖에 지나지 않아, 표준형 보험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해지율 차이를 합리적으로 측정할만한 충분한 경험 통계가 집적되지 않았음
- 또한, 현 상품구조에 해지율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 이는 해지율차손이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에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는 견해임
 - 다만, 보험상품의 손익 분석은 분석 가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는 보험영업에서 매우 중요하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로 인한 보험회사 파산 사례가 있으므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과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kiqi**